2023년 폐기물 수거용역 단가계약 특수조건

- 제1조(적용) 이 조건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폐기물 수거용 역 계약에 적용되는 선박 폐기물처리에 대한 단가계약에 적용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수요기관"이라 함은 계약된 폐기물 수거용역을 요청할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을 말한다.
 - ② "물품검수공무원"이라 함은 동해어업관리단이 별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라 함은 낙찰자를 말한다.
- 제3조(수거장소 및 조건) 감만시민부두, 대변항, 항계내 해상 또는 선박수리로 인한 부산항 내 상가 중인 선박에 직접 수거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처리지시) ① 수요기관은 처리품목, 처리대상선박, 수량 및 처리일자를 처리기일 2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긴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정기적 처리는 매주 수요일(협의 가능)이며, 정기적 수리 시(척당 3회) 또는 행사로 인해 수요기관에서 처리를 요할 경우 이의 없이 처리에 응해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전항에서 처리 지시한 내용을 처리하여야 하며, 해당 물품검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를 확인 검수하고 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
- 제5조(지체상금) 계약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동경과 일수 매1일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가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처리대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사유에 관하여 계약자가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등을 제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있다.(「국가계약법 시행규칙」제75조3호 물품의 수리·가공·대여, 용역 및 기타: 1천분의 1.25)
- **제6조(단가계약)** ① 해양오염발생물칠 수거용역의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 무원이 기본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폐기물수거의 처리를 요구한다.
- ② 예상수거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처리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 도 처리하여야 하며, 증감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제7조(대가지급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

- 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자가 통보한 물품검수 공무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월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요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- 제8조(채권양도 등)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채권의 양도 또는 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승인 없이 채권양도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9조(처리기한) 수요기관이 요청한 수거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수요기관이 긴급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0조(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) ①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처리기일이 10일간을 경과하여도 처리하지 아니할 때
 - 2. 기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
 - ② 계약해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른다.
- 제11조(계약변경)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12조(계약해석의 우선순위)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.
 - 1. 계약서
 - 2. 선박 폐기물수거용역계약 특수조건
 - 3. 용역계약 특수조건
 - 4. 용역 입찰유의서
 - 5. 청렴계약이행각서
 - 6.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
 - 7. 청렴계약특수 조건
- 제13조(계약유효기간)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. 12. 31까지로 하되, 2 024년도 폐기물 처리 용역 연간단가계약 계약체결이 지연될 시 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한다.